

서로 다른 표기법의 통일 방안

전수태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미국의 '世界未來協會'는 1997년의 미래 진단 프로젝트에서 '21세기 전망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1위는 '世界 言語의 90% 消滅'이었다고 한다. 이는 문자 없는 언어나 기계화하지 못한 언어의 운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한국어는 문자가 없는 소수의 언어도 아니고, 기계화하지 못한 언어도 아니므로 생존 자체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뻗어나가는 국력과 함께 정보화에 강한 고학력 젊은 세대들에게서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남북한이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표기법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단일한 언어를 표현하면서 서로 다른 표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혼란과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민족어 발전에 부정적인 저해 요소는 빨리 극복되어 마땅하다.

표기법을 맞춤법과 동일 개념으로 본다면 남한에서 쓰는 표기법인 현행 맞춤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확정되어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며 북한의 그것은 1987년 5월 15일

국어사정위원회가 제정하고 1988년 2월 16일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한 ‘조선말규범집’의 여러 규정이다.

‘한글 맞춤법’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부록으로 처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조선말규범집’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문화어발음법을 포함한다. 표준 발음법은 남한에서는 ‘표준어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에서 1) 자모의 수·차례·이름, 2) 두음 법칙, 3) 사이시옷, 4) 띄어쓰기, 5) 문장 부호 등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의 통합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¹⁾

2. 자모의 수·차례·이름

남북한 어문 규범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 자모의 사전 배열 순서, 자모의 이름 등에서 얼마간 차이가 있다.²⁾

남한 규범은 ‘한글 맞춤법’ 제4항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 ㅌ(티을) ㅍ(피을) ㅎ(히을) ㅏ(아) ㅑ(야) ㅓ(어) … ㅜ(우) ㅠ(유) ㅡ(으) ㅣ(이)로 하고 있다. [붙임 1]에서는 이들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를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는 방법과 그 순서와 이름을 정해 놓고 있는데 ㅍ(쌍기역) … ㅍ(쌍지읒) ㅞ(애) … ㅟ(의)로 되어 있다. [붙임 2]에서는 사전에 올릴 때의 자모 순서를 보였는데 받침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받침까지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때, () 속에 표시된 것은 받침 글자이다.

1) 이 논의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국립국어연구원과는 무관한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힌다.

2) 자모 수에 대하여 남한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스물네 자’라고 명시하였으나 북한의 ‘조선말규범집’에서는 ‘마흔 자’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를 따르지 않았다. 특히 ‘ㅇ’의 배열에서는 중성일 때에는 ‘ㅅ’ 다음에 두고 초성일 때에는 자모 배열의 맨 끝에 놓았는데 ‘ㅇ’이 이때에는 소리가 없음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영어의 knife, psychology나 불어의 homme에서 보듯이 k, p, h 등의 철자가 실제로는 발음이 없으면서도 자모순을 따라 배열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그 타당성은 크게 훼손된다. 그리고 단일 자모를 앞에 배치하고 겹자모를 뒤에 배치하는 방법은 일견 타당한 듯해 보이지만 이 타당성도 모음의 경우에 국한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음의 경우, 특히 받침으로 쓰일 때, 같은 모양의 ㄱ을 겹친 ㄱ이 이질적인 자모를 겹친 ㄱ의 뒤에 온다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하겠다. 또, 발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자는 ㄱ과 자질만 다를 뿐 같은 계열의 음인데 ㄱ은 각기 다른 두 음의 개별적인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그 설득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자모 배열 순서는 남한의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⁴⁾

자모의 이름에 대하여 남한은 ‘기역’, ‘디귤’, ‘시옷’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기옥’, ‘디은’, ‘시웃’으로 명명하여 둘째 음절의 모음을 ‘ㅡ’로 단일화하였다. 최세진이 『훈몽자회』에서 이들 세 자모의 이름을 당시 표기 수단인 한자로 표시할 때 불가피하게 ‘役’, ‘末’, ‘依’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북한의 방법을 따라도 큰 잘못은 없을 듯하다. 같은 자모를 겹쳐 쓴 경우 남한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따라 ‘쌍기역’… 등으로 명명했는데 북한에서는 발음을 따라 ‘된기옥’…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 모든 글자는 1차적으로 그 형상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인지되는 것이고 발음은 언어 사용자들의 인위적 공감대 위에서 2차적으로 인지되는 것이므로 글자에 대한 명명은 그 글자의 형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하여 우리의 방법대로 ‘쌍…’ 등으로 하는 것이

4) 북한의 자모 배열 순서 가운데 자음의 배열이 이미 ㄱ ㄴ… 로 겹자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위 자모 모두를 앞에 배열하고 겹자모 모두를 뒤에 배열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그것은 자음에서 ㄱ ㄱ … 로 한번 지나간 ㄱ은 뒤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모음에서는 ㅏ ㅓ ㅗ ㅛ … 의 순서가 되어 한번 나온 ㅏ ㅓ는 다시 뒤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 즉 자음, 모음 배열에서 일관성이 유지된다.

좋을 것이다. 자모 명칭에서 북한은 ‘그’, ‘느’, ‘드’… 등의 명명도 허용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경우, ㄱ는 ‘그스’, ㄴ는 ‘느즈’, ㄷ는 ‘드흐’ 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⁵⁾

3. 두음법칙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도 남북한 어문 규범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자음 표기에서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대체로 ‘ㄴ’은 ‘ㅇ’으로, ‘ㄹ’은 ‘ㄴ’으로 표기하지만 북한에서는 대체로 원음을 표기한다.

남한의 규범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10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데, 다만 ‘냥(兩), ‘냥쫙(兩), ‘년(年)(몇 년)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11항에서는 한자음 ‘랴, 러,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데, 다만 ‘리(里: 몇 리나?),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등의 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하였다. 이어 제12항에서는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규범에서는 ‘맞춤법’ 제25항에서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국가’, ‘녀자’, ‘뇨소’, ‘당’, ‘락원’, ‘로동’, ‘례외’, ‘천리마’, ‘풍모’ 등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궁궐’, ‘라사’, ‘라팔’, ‘료

5) 현행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는 1948년 북한의 ‘조선어신철자법’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1933년의 규범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신철자법에서는 북한이 자모를 42로 하였고, 자모 명칭을 ‘기옥’, ‘디웃’, ‘시웃’으로 하였으며, 사잇소리 표기는 ‘뒤’간처림 사이표(‘)로 나타내었고, ‘녀자’, ‘락원’ 등 원음 표기를 규정하였으며, 어미 ‘-어’를 ‘-여’로 표기하였다. 이들 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1954년의 ‘조선어철자법’, 1966년의 ‘조선말규범집’을 거쳐 현행 1987년의 ‘조선말규범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는 변한 소리대로 '궁냥', '나사', '나팔', '요기'로 적는다고 하였다.

□ 통합 방안

남한은 '한글 맞춤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걸쳐 한자음 'ㄴ, ㄹ'이 두음, 즉 단어의 첫소리에 오는 것을 꺼려 'ㄴ, ㄹ'을 대체로 'ㅇ'으로 적도록 하였으며 일부의 'ㄹ'을 'ㄴ'으로 적도록 하였다. 단, 냥(兩), 년(年), 리(里), 리(理) 등은 원음대로 적는다.

여기에 대하여 북한의 맞춤법은 역으로 한자 원음을 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원음주의가 일관성 있게 표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어서 '궁냥', '나사', '나팔', '요기' 등에서는 남한의 규범에 합치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상벽(리상벽)의 『조선말 화술』(1975)에서는 '래일', '로인', '롱락', '료리', '비률', '녀성', '녕변' 등을 '내일', '노인', '농락', '요리', '비율', '여성', '영변' 등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남쪽 사람들이 유음이 두음으로 오는 많은 외래어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발음하고 또 그대로 표기하면서 한자어에서만 기피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북쪽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남쪽처럼 발음하면서 한자 원음 표기에 집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우리는 남북한 양측의 어문 규범이 그 총칙에서 다같이 형태 표기를 표방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⁶⁾ 이 문제는 한자 원음을 표기하되, 발음은 양쪽 모두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6) 남한은 총칙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북한의 경우는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4. 사이시옷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에서 뒷말이 된소리로 되거나 뒷말의 첫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쓰나 북한에서는 이를 받치지 않는다.

남한의 규범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고 하였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 등 6단어 등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맞춤법’ 제15항에서 합친 말을 이를 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 소리가 거센 소리로 바뀌어 나는 것은 덧나고 바뀌어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하여 ‘마파람’, ‘살코기’, ‘수캐’, ‘수뚝지’, ‘좁쌀’, ‘휘파람’, ‘안팎’ 등의 예를 들었다. 또 [붙임]을 통하여는 소리 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사이시옷을 붙여 ‘셋별’/‘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비바람’(비와 바람)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는 덧나는 소리 표기에 대한 다른 조항이 없으므로 북한에서는 덧나는 소리 표기는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통합 방안

사잇소리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있어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사잇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북한은 이와는 태도를 달리 하고 있다. 남한의 규범이 표기에 부담을 주더라도 발음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면 북한의 규범은 발음에 부담을 주더라도 표기를 단순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전에 발음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시옷이 없을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고래재’, ‘메나물’, ‘도리깨열’, ‘깨잎’, ‘귀병’에서 이를 ‘[고래재-고래쟁]’, ‘[멘나물]’, ‘[도리깁널]’, ‘[깁닙]’, ‘[귀뽕-궂뽕]’으로 읽는 규칙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좁쌀’, ‘마과람’, ‘살코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ㄷ’과 ‘ㅎ’의 자취는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면서 ‘ㅅ’만을 제외하는 것도 약점이다.

사이시옷을 폐기하면 동음이의어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이를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된다. 사이시옷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도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북한 규정의 ‘셋별’과 ‘빗바람’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남한의 규정을 잘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의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에 꼭 6개의 단어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점은 ‘ㄴ’ 소리가 덧나가거나 된소리로 날 경우마다 사이시옷을 붙여야 하므로 엄청난 수의 사전 표제어가 사이시옷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전 올림말의 많은 수가 단어의 원형을 보이기 보다는 발음형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형태 표기라는 대원칙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이시옷 한 가지로 말미암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5. 띄어쓰기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씬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2000)에

서는 “과거 규범이 각 품사별로 띄어쓰기를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세분화해 복잡하고 산만했던 것과 달리 토씨가 붙은 경우와 서로 다른 품사 사이는 띄어쓰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 특징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

남한의 규범은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또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는 제47항, 고유명사의 띄어쓰기는 제49항,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는 제50항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같이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기도 허용하고 있다.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2000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8회에 걸쳐 기사 형식으로 개정된 띄어쓰기 규정을 소개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언급해 보면 아래와 같다.⁷⁾

첫째, ‘-아’, ‘-어’, ‘-여’, ‘-고’형 다음에 오는 단어는 띄어 쓴다. 둘째, 품사가 다른 단어들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과도 사나운 기습’, ‘꽃 피는 마을’ 등이 그것이다. 셋째, 단어들 사이에 어미가 붙고 품사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뜻덩이’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이 있는데 ‘붉은기’,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건설구상 실현’ 등이 그 예이다. 단, 이때 모두 5개 단어 이상을 붙여 쓸 수 없다. 넷째, 의존명사(불완전명사)·단위명사와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 쓰고, 학술 용어는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아는것이 힘’, ‘토끼 세마리’, ‘보천보 전투승리 50돛기념 중앙보고회’, ‘짐신고부리는기계’ 등이 각각 그 예이다.

7) 이 규범은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되었다. ‘로동신문’은 2000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8회에 걸쳐 기사 형식으로 북한의 개정된 띄어쓰기 규정을 소개하였는데 제1회는 ‘로동신문’ 기자 강국치, 제2회~제7회는 국어사정위원회 리근용, 마지막 제8회는 국어사정위원회 서기장 심병호가 필자로 되어 있다. 이 기사가 ‘로동신문’에 실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제1회 2000년 2월 17일에서 시작하여 제2회 3월 5일, 제3회 3월 11일, 제4회 3월 12일, 제5회 3월 14일, 제6회 3월 18일, 제7회 3월 19일, 제8회 3월 21일 등의 순서가 된다.

□ 통합 방안

남한의 띄어쓰기 규범은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제50항까지 10개 항목에 달하는데, 주된 내용이 단어마다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문 용어·고유명사와 보조 용언에서 붙여 쓰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띄어쓰기 규범은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1987년 규범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여 우선 항목 수에서도 제1항에서 제22항까지 22개 항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본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70여 가지의 복잡다단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90년 2호 『문화어학습』을 통하여 추가로 규정을 보완하여 붙여 쓰기를 더 늘렸다.⁸⁾

그런데 이번 2000년의 개정안에서는 종전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단순해졌다. 이는 붙여 쓰는 조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만큼 남한의 규범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 ‘-어’, ‘-여’, ‘-고’ 형 다음에 오는 단어를 띄어 씌으로써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를 띄어 쓰도록 하였고, 품사가 다른 단어들은 원칙적으로 띄어 쓰게 함으로써 우리 규범의 원칙에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 같은 16음절 정도의 길이를 가진 단어가 다수 등장한다는 것은 북한 띄어쓰기 규범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 준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다. 언어 자료도 기계화, 디지털화를 통하여 전달되고 그 분석은 자동 분석을 지향하고 있다. 단어별로 엄격히 띄어 쓰는 것이야말로 언어 자료 처리의 기계화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8) 이는 그들의 계간지 『문화어학습』 1990년 제2호를 통하여 소개된 것인데 명사 앞에 뒤붙이 ‘-형’, ‘-식’, ‘-적’, ‘-용’, ‘-급’, ‘-성’ 등이 붙은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는 것이었다.

6. 문장 부호

남한의 문장 부호에 대한 규범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북한의 그것은 ‘조선말규범집’의 ‘문장부호법’으로 처리되어 있다. 남한의 문장 부호는 7가지로 대별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마침표 . 온점(。 고리점) ? 물음표 ! 느낌표
2. 쉼표 , 반점(、 모점) · 가운데점 : 쌍점
/ 빗금
3. 따옴표 “ ” 큰따옴표(『 』 겹낫표) ‘ ’ 작은따옴표(「 」 낫표)
4. 묶음표 () 소괄호 { } 중괄호 [] 대괄호
5. 이음표 — 줄표 - 붙임표 ~ 물결표
6. 드러냄표 ·, ° 드러냄표
7. 안드러냄표 ××, ○○ 숨김표 □ 빠짐표 줄임표

북한의 규범은 ‘문장부호법’ 제1항 ‘우리 글에서 쓰는 부호의 종류와 이름’에서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있다. 또, 제20항에서는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이름 그리고 차례를 보이고 있다.

- . 점 : 두점 , 반점 ; 반두점
 ? 물음표 ! 느낌표 - 이음표 — 풀이표
 ... 줄임표 《 》 인용표 〈 〉 거듭인용표 () 쌍괄호
 [] 꺾쇠괄호 밑점 ××, ○○, □ 숨김표
 " 같음표 ~ 물결표

□ 통합 방안

남한에는 있으나 북한에는 없는 부호는 가운데점(·), 빗금(/), 중괄호({

}), 빠짐표(□) 등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있으나 남한에 없는 부호는 같음표(〃), 반두점(:) 등이다.

기능은 대동소이하면서 그 명칭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온점/점(.), 쌍점/두점(:), 큰따옴표/인용표(“ ”, « »), 작은따옴표/거듭인용표(‘ ’, 〈 〉), 소괄호/쌍괄호(()), 대괄호/꺾쇠괄호([]), 줄표/풀이표(—), 붙임표/이음표(-), 드러냄표(···)/밑점(…) 등인데 전자가 우리 규범의 부호 명칭이고 후자가 북한 규범의 부호 명칭이다.

여기에서는 남북한에서 각각이 모자라는 부호를 보충하여 통합안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때 명칭은 한자어 명칭보다는 고유어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북한 규범에서 부호가 하나인 작은따옴표를 ‘거듭인용표’라 하고, 부호가 둘인 따옴표를 ‘인용표’라 하여 혼란을 주는 것은 큰 약점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와 이름을 정한 것은 이를 그대로 남쪽에서 받아들여 써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논문이나 저서에서 이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편자가 필자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할 때 그 가름을 통일하기 위해 일일이 따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7. 맺음말

우리는 위에서 1988년 1월 19일 고시되어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한의 ‘한글 맞춤법’과 1987년 5월 15일 국어사정위원회가 제정하고 1988년 2월 16일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한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을 비교하여 보았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류의 언어가 기계화, 디지털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때, 남북한 언어가 표기법에서 차이가 있어 정보화에 걸림돌

이 된다면 이는 큰 손실이다. 그리하여 이를 의식한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1996년 중국 장춘에 모여 어문 규범 통일을 위한 논의를 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 전반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을 하였는데 어떤 합의 도출보다는 서로 자기 쪽 규범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어문 규범을 통일하는 데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 준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언어에는 그 자체에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쪽의 규범이나 북쪽의 규범이나를 가릴 것 없이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것이라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일제 강점기에 모국어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글 표기법의 대원칙은 정보화 또는 기계화에 적응하도록 가능한 한 단순하고 간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 문헌

-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연구원(1992). 『북한의 언어 정책』.
- 국어사정위원회(1966).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원출판사.
-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 김민수(1989). 『북한의 국어 연구』. 일조각.
- 김영아(1989). 「북한 문법 토에 대하여」.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 로동신문. 2000. 2. 17. ~ 2000. 3. 21.
- 문교부(1989).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사회과학출판사. 『문화어학습』 1990년 2호.

- 임흥빈(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 전수태(1992). 「북한의 문법론」. 『국어학 연구 백년사 III』. 일조각.
- 전수태(1999). 「북한 문법의 격과 토」.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 전수태·최호철. 『남북한 언어 비교』. 도서출판 녹진.
- 최호철·홍종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